의안번호	2204830
의 뢰 인	김선민 의원
회 답 일	2024.7.26.
추계번호	24C0882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2,751조원(2023년 기준 불변가격)이 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93년

구 분	2025~2093년 누적 추가재정소요
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(안 제51조)	2,751조원(2023년 기준 불변가격)

주: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참고로, 개정안에 따른 제도 적용 시,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5년 연기되는 반면,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22.9조원 증가[1]할 전망

[표 2]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

구 분	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	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	적립금 소진연도	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
현 행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9% • 소득대체율: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%까지 매년 0.5%p씩 하향 조정 중(2024년 42%)	2040년	2055년	-
개정안	• 보험료율: 2025년 9%에서 2033년 13%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0.5%p씩 상향 조정 • 소득대체율: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025년 42% 적용 후 2041년 50%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0.5%p씩 상향 조정	**2045년 (+5년)**	**2060년 (+5년)**	**+722.9조원 (2023년 불변가격)**

주: 2093년은 현재 전망모형 상 전망기간의 마지막 시점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현행 제도 상 누적적자보다 증가한다는 의미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1조 (기본연금액)	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5년 42%에서 2041년까지 50%로 단계적 상향조정 ※ (현행) 2008년 50%에서 2028년 40%까지 단계적으로 하향조정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1조(기본연금액)	○	○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시 급여 증액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❑ 소득대체율의 변경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본 추계서는 개정안 시행시점인 2025년부터 현행 재정전망 모형의 마지막 시점인 2093년까지의 누적 추가재정소요를 제시

○ 특정 해의 소득대체율은 그 해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미래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적용

- 예를 들어, 2024년 소득대체율이 42%라는 것은 2024년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향후 연금액을 산출할 때 이를 적용한다는 의미로, 2024년 30세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, 35년 후인 그 사람이 65세에 도달한 시점에 연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해서 소득대체율 42%가 반영되는 체계

○ 이에 소득대체율의 변화가 제도화되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됨

- 2025년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인 반면,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이므로, 2025년에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어 급여가 인상되는 사람들은 2025년 중 1개월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해에 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하거나, 2025년 중 1개월 이상 의무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해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개시한 사람 등으로 수급자의 극히 일부에만 개정된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, 이들에 대해서도 전체 가입기간 중 2025년에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에 대해서만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되므로 급여 인상분이 크지 않음
- 본인의 전체 가입 중 2025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연금급여 증액 효과가 크므로 후세대로 갈수록 재정지출 증가분이 더 커지게 됨

○ 따라서 단기간의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정보는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의 누적 추가재정소요를 제시

-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통해 계산하며, 불변가격은 GDP디플레이터(2022.12. 기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)로 각 연도 발생금액을 나누어 산출

❑ 안 제88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율을 2025년 9%에서 2033년 13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 발생할 수입 증가액은 본 추계서의 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[2], 법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변경에 따른 국민연금 적자 전환 및 기금 고갈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부대의견에 [참고자료]로 제시

2)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'재정지출의 순증가액' 또는 '재정수입의 순감소액'이므로,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'재정수입의 증가액'은 비용추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산출

○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와 2022년 말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

[표 3]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전망모형의 주요 변수

구 분		변수 개요
인구변수		·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「장래인구추계」의 2023년~2093년 추계결과(중위 가정)를 적용
거시경제변수	임금상승률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~2093년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(기간 평균 3.2%)
	물가상승률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~209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(기간 평균 1.9%)
	회사채금리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~2093년 AA-명목회사채금리(3년 만기) 전망치(기간 평균 2.9%)
	경제활동참가율	·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~2093년 연도별·성별·연령구간별 전망치
제도변수		· 국민연금 가입률, 지역가입자 비중, 납부예외자 비율, 지역가입자 징수율,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등 외생변수는 보건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수행할 때 사용한 전망치 준용 · 그 외 제도변수는 과거 실적 추세와 각종 모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변수 적용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%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93년까지 69년간 2,751조원(2023년 기준 불변가격)이 될 것으로 추계됨

[표 3]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전망 결과

구 분	소득대체율
현 행	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%에 도달(2028년)하기까지 매년 0.5%p씩 하향 조정 중(2024년 현재 42.0%)
개정안	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5년 42%로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한 후 2041년 50%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0.5%p씩 상향 조정
2025~2093년 누적 추가재정소요	**2,751조원(2023년 기준 불변가격)**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개정안에 따른 제도 적용 시, 국민연금기금 재정수지 적자 전환연도와 적립금 소진연도는 각각 5년 연기되는 반면, 2093년 기준 누적적자는 202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722.9조원 증가할 전망

[참고자료] 현행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제도 비교

구 분	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	재정수지 적자 전환 연도	적립금 소진연도	2093년 기준 누적적자 증감
현 행	• 보험료율: 기준소득월액의 9% • 소득대체율: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 40%까지 매년 0.5%p씩 하향 조정 중(2024년 42%)	2040년	2055년	-
개정안	• 보험료율: 2025년 9%에서 2033년 13%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0.5%p씩 상향 조정 • 소득대체율: 40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025년 42% 적용 후 2041년 50%에 도달하기까지 매년 0.5%p씩 상향 조정	**2045년 (+5년)**	**2060년 (+5년)**	**+722.9조원 (2023년 불변가격)**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